

대구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단13613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무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진혁, 한동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변 론 종 결 2023. 5. 24.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23,900원 및 그 중 93,523,900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10. 1.부터 2026. 8. 1.까지의 기간 중 피고가 원고를 C식당 영업사장으로 재채용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매월 1일에 1,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안동시 D 소재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의 목적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사장으로 채용하기로 한다.

2. 채용기간

채용기간은 2021. 9. 1.부터 2026. 7. 31.까지로 한다.

3. 계약의 조건

(1) 영업사장 원고는 피고가 위 식당을 27년간 운영하면서 쌓은 식당의 명성, 현존하는 시설,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다만, 원고는 피고의 사전 서면승낙을 얻어서 위 식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공사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영업사장 채용계약이 종료하거나 피고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혹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인테리어 비용, 필요비, 유익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4)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피고는 아래 제(7)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 식당 세후 운영순익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5) 원고는 매월 말 식당 운영에 관한 거래내역, 금전출납, 수입 지출내역, 기타 재무 상태를 정확히 표시하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금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7) 피고와 원고는 위 제(5)항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매월의 세후 운영순익을 정산한 후 피고는 세후 운영순익의 50%를 취득하고,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세후 운영순익의 50%는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8) 원고는 급여와 성과급의 수령에 따른 세금을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21. 10. 12.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을 어기고, 피고에게 욕설, 협박, 공갈 등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영업사장에서 해고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비품 교체비용으로 합계 93,523,9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고,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교체한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3,52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비품을 교체하였다거나 그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비품 교체비용으로 93,523,9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공사 및 집기비품 교체비용으로 93,523,900원을 지출하였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필요비, 유익비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61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2021. 10. 12.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부터 원고를 다시 영업사장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대한 공사 및 집기비품 교체를 비롯하여 식당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극도로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다툼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허가를 취소시킨다거나 손님을 쫓아내고 식당에 대한 잘못된 점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③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한 점, ④ 피고의 해고통지 이후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비 정산문제 등의 다툼으로 인하여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